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1가합266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한민국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밝음

담당변호사 최학진

변론 종결2023. 7. 13.

판결 선고2023. 9.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20. 6. 18. 체결된 7억 원의, 2020. 8. 14. 체결된 17,176,003원의 각 증여계약을 389,343,9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89,343,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 비 적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C 돈암동지점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6. 18. 7억 원, 2020. 8. 14. 17,176,003원의 각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을 389,343,9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C에 대한 389,343,980원의 예금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C에게 위 예금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

(1) B는 2020. 3. 1. 소외 D, E에게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호에 대한 수분양권을 1,143,390,000원(프리미엄 6억 9,800만 원 포함)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3. 1. 3억 원을, 2020. 3. 2. 5억 원을 각 수령하였다.

(2) B는 2020. 5. 31. 원고 산하 서대구세무서장에게 위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신고를 하였고, 서대구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173,875,000원을 2020. 9. 11.까지, 173,875,000원을 2020. 11. 19.까지 각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B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2021. 9. 기준 B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20	2020. 3. 31.	2020. 5. 31.	2020. 9. 11.	173,875,000원	196,171,360원
2020	2020. 3. 31.	2020. 5. 31.	2020. 11. 19.	173,875,000원	193,172,620원
합계	347,750,000원	389,343,980원			

나. 피고 명의 계좌로의 금전 지급

(1) B는 D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6억 원을 2020. 3. 3., 3,000만 원을 2020. 3. 4. 각 수표로 인출하여 자신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하였다.

(2) B는 위 계좌에서 전 배우자(B와 피고는 2019. 9. 6. 이혼하였다)인 피고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2020. 6. 18. 7억 원을, 2020. 8. 14. 17,763,003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1부터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B가 피고의 이 사건 계좌로 2020. 6. 18. 7억 원을, 2020. 8. 14. 17,763,003원을 각 송금한 것은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이고, 채무초과상태인 B가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은 B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돈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각 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B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송금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는 예금주 명의신탁에 해당하는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돈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각 돈 상당의 예금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C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B는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위 각 돈을 주식투자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이 사건 계좌는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¹⁾.

나.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계좌 등의 입출금내역 및 잔고

앞서 든 증거와 을3,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가 이 사건 계좌에 2020. 6. 18. 입금한 7억 원과 2020. 8. 14. 입금한 17,763,003원은 입금된 날 바로 이 사건 계좌에 연동된 피고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이하 '이 사건 연동계좌'라고 한다)로 전부 이체되었다.

(나) 이 사건 계좌에는 계좌가 개설된 2020. 6. 18.부터 2021. 2. 18.까지 이 사건 연동계좌로의 입출금 외에 아래와 같은 거래내역이 존재한다.

1) 이 사건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주식매매대금이 입출금되었다.

2020. 6. 29.	거래소주식매수	I	3,002,873,970원
2020. 7. 1.	거래소주식매도	I	2,436,683,778원
2020. 7. 16.	거래소주식매도	I	487,487,313원
2020. 9. 2.	공모주 청약	J	348,000,000원
2020. 9. 4.	공모주 청약환불금	J	347,544,000원
2020. 10. 7.	거래소주식매수	K	322,726,400원
2020. 11. 4.	거래소주식매도	K	337,957,002원
2020. 11. 5.	코스닥주식매도	J	880,412원
2020. 11. 16.	거래소주식매수	K	338,684,340원
2020. 11. 18.	거래소주식매도	K	365,226,271원
2020. 11. 23.	거래소주식매수	L	358,433,570원
2020. 12. 15.	거래소주식매수	M	360,304,040원
2020. 12. 15.	거래소주식매도	L	364,603,410원
2020. 12. 22.	거래소주식매도	M	387,531,695원
2020. 12. 24.	코스닥주식매수	N	173,173,000원
2021. 1. 5.	거래소주식매수	O	5,335,330원

2020. 6. 29.	거래소주식매수	I	3,002,873,970원
2021. 1. 6.	거래소주식매수	O	20,274,250원
2021. 1. 7.	거래소주식매수	K	100,052,950원
2021. 1. 7.	거래소주식매수	O	53,911,340원
2021. 1. 11.	거래소주식매수	I	1,335,952,110원
2021. 1. 11.	거래소주식매도	K	108,368,707원
2021. 1. 11.	거래소주식매도	O	79,500,381원
2021. 1. 11.	거래소주식매도	I	1,400,712,345원
2021. 1. 12.	거래소주식매수	P	139,035,690원
2021. 1. 12.	거래소주식매수	I	1,764,673,410원
2021. 1. 12.	거래소주식매도	P	136,875,244원
2021. 1. 14.	거래소주식매도	I	1,484,232,457원
2021. 1. 15.	코스닥주식매도	N	150,202,690원
2021. 1. 18.	거래소주식매수	I	149,414,260원
2021. 1. 22.	거래소주식매수	I	386,695,300원
2021. 1. 22.	거래소주식매도	I	388,693,066원
2021. 1. 25.	거래소주식매도	I	426,675,818원
2021. 1. 26.	거래소주식매수	K	201,251,050원
2021. 1. 27.	거래소주식매수	L	226,812,850원
2021. 1. 28.	거래소주식매도	L	253,999,028원
2021. 1. 28.	거래소주식매도	K	210,582,777원
2021. 2. 2.	거래소주식매수	K	288,288,000원
2021. 2. 3.	거래소주식매수	I	158,658,500원
2021. 2. 5.	거래소주식매도	K	298,013,302원
2021. 2. 8.	거래소주식매수	I	295,571,270원
2021. 2. 16.	거래소주식매도	I	238,687,731원
2021. 2. 18.	거래소주식매도	I	246,548,701원

2) 2021. 1. 5. 이 사건 계좌에서 950만 원이 출금되었다.

3) 2021. 2. 18. 이 사건 계좌에서 소외 Q 명의 C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46,548,701원이 이체되었다.

(다) 이 사건 연동계좌에는 계좌가 개설된 2020. 6. 18.부터 2021. 2. 18.까지 이 사건 계좌로의 입출금 외에 아래와 같은 거래내역이 존재한다.

1) 2020. 7. 2. 이 사건 연동계좌에서 소외 R 명의 H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7,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2) 이 사건 연동계좌에서 2020. 8. 14. 2억 3,030만 원, 2020. 9. 1. 2,000만 원이 각 수표로 출금되었고, 위 수표 중 2억 3,030만 원은 R 명의 H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입금되었다.

3) 2020. 10. 5. 이 사건 연동계좌에서 B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이 이체되었다.

4) 이 사건 연동계좌에서 2020. 12. 4. 660만 원, 2021. 2. 5. 990만 원이 각 출금되었다.

5) 2021. 2. 18. 이 사건 연동계좌에서 Q 명의 C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50,737,971원이 이체되었다.

(라) 2021. 2. 18. 이 사건 계좌와 이 사건 연동계좌의 잔액은 모두 0원이었고, 2022. 5. 11. 이 사건 계좌와 이 사건 연동계좌는 해지되었다.

(2) 이 사건 계좌의 관리 주체

위 인정사실과 을1, 10, 14,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위 각 돈에 관하여 B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였고, B가 이 사건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면서 위 각 돈을 주식거래 등으로 전부 소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B는 피고에게 주식계좌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요청하여 이를 건네받았고, 2020. 6. 16. 피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으로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한 후 같은 달 18. C 돈암동지점에서 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의 대리인 지위에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B는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계좌개설서류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서 전화번호는 피고의 휴대전화번호가 아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였고, 잔고통보 등 이 사건 계좌와 관련한 알림을 위 휴대전화로 받는 것으로 신청하였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계좌를 직접 개설하지도 않았고 거래내역이 피고에게 통지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B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1. 12. 16.자 충북제천경찰서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 7억 원이 입금된 내역 등을 피고가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B는 2022. 10.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고단203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법원도 이 사건 계좌를 B가 관리하였다고 판단하였다²⁾. 한편 피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 대상인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위 각 돈은 이미 B에게 모두 반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 또는 예금주명의신탁 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우정

판사김연수

판사김현호

1)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주위적으로는 위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금원지급행위가 예금주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다(피고의 2023. 7. 11.자 준비서면 5쪽).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그 소송물은 사해행위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이고, 그 금원지급행위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모습인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배상청구 역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단지 공격방어를 달리하는 하나의 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아래에서 이 사건 소 전체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2) 위 법원은 공소사실 그대로 유죄판결을 하였는바, 공소장 2쪽 '피고인은 ..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20. 6. 18. 피고인이 관리하던 A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 사건 계좌임)로 7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부분 참조